



보상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1. 9. 23.

개정 2023. 2. 16.

개정 2026. 2. 06.

매일유업 주식회사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역할)

위원회는 임원의 장단기보상에 대한 검토, 심의 및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을 제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.

- ③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 5 조 제 3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 3 영업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9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 보고에 앞서 사전 검토한다.

- ①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 한도의 적정성 평가 및 제안
- ② 임원 및 핵심인재에 대한 특별보상안 결정(현금, 주식매수선택권 및 스톡옵션 등)
-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 영업일 이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 13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조직은 재무담당(CFO)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록 작성을 포함하는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

제 1 조 이 규정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

제 4 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